

의안번호	2204803
의 퇴 인	박정훈 의원
회 답 일	2024.10.29.
추 계 번호	24C4393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10년마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억 7,600만원(연평균 1억 9,500만원)으로 추계

[표 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816	—	—	—	—	816	163
공청회의 개최 (안 제8조)	160	—	—	—	—	160	32
합 계	976	—	—	—	—	976	195

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학교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재배치 학교의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종합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재량규정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 제8조 (공청회의 개최)	(제1항)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1조 (배치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7조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항)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항)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및 복수용도의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무규정
		(제4항)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8조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이전·재배치 모형 개발 2. 학교 이전·재배치 시행방안 발굴·조사·연구 3. 학교·이전 재배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지원 5. 이전·재배치 학교의 입지 적정성에 관한 자문 지원 6. 학교 이전·재배치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7.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재량규정
		(제5항)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재배치 학교의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조문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재정소요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	
3	안 제8조 (공청회의 개최)	○	
4	안 제11조 (배치계획의 수립)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본 추계서에서는 제정안은 배치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의 설립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립되고 있는 5년단위 중기 학생배치계획이 시도교육청의 담당인력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한 것으로 봄 참고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중기(5년)단위 학생배치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학생수 및 학급수, 학교수 추이(계획), 연도별 학생배치계획, 학교 규모계획, 소규모 학교 및 과대학교 현황(예측), 학교 신설 계획 및 휴교·재개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5	안 제17조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특례)	×	·재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¹⁾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체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이 실시되지 않게 되어 학교 신설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학교 신·증설 여부 등과 증가하게 될 학교 수 등²⁾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6	안 제18조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가 곤란하거나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종합계획(안 제6조) 및 ②공청회의 개최(안 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비용에 대해서는 10년 주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 수렴 비용, 작업 수

1)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참고로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신설·이전·증설비 등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됨

당, 자료 제작 및 홍보·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각각 발주한 유사 연구용역비를 준용
-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추계 1차연도(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청회 개최 비용은 개정안에서 공청회 개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청회 실시를 위하여 지출되는 장소 임차료와 운영비를 추계
 - 교육부가 2022년에 실시하였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체제 구축을 위한 공청회’ 경비를 준용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 10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는 2025년에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발주한 유사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3년과 2020년에 각각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선연구’와 ‘중학교 학교군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각 약 4,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음
 -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연구용역비의 규모와 유사하게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하여 5년간 총 8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함
 - 8억 1,600만원=4,800만원×17개 시도교육청

[표 2]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816	-	-	-	-	816	163

주: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의 ‘공청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경우 실시되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10년 주기로 공청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하며, 유사 사례의 공청회 개최 비용을 준용
- 교육부는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체제 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경비로 1분과 1회당 운영비 500만원과 임차료 39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공청회와 유사하게 개정안에 따른 공청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총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함
 $- 1억 6,000만원 = 890만원 \times (17개 시도교육청 + 교육부장관)$

[표 3]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비용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공청회의 개최 (안 제8조)	160	-	-	-	-	160	32

주: 유사 사례를 준용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공청회 개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816	-	-	-	-	816	163
공청회 개최(안 제8조)	160	-	-	-	-	160	32
합 계	976	-	-	-	-	976	195

주: 유사 사례를 준용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